

協會像 正立을 위한 提言

李永熙

회립종합건축사사무소
서울특별시지부 부지부장

지난 4반세기 동안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혁명하게 대처하여 오늘날의 우리협회가 있기까지 이끌어주신 선배회원님들의 노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는 그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현금의 급박한 상황과 산적된 요구는 여기에만 머무를 수 있으리만큼 안일하지 않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협회를 경원시하고, 협회의 존재 의미를 의문시하는 말없는 단수가 엄존하고 있고, 우리의 잔치날이 되어야 할 총회장은 마치 정치마당을 방불하듯, 성토장이 되고 있는 것, 또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뜻하는 것은 우리의 단체는 아직도 전문인의 집합체로서 성숙단계에 이르지 못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역설적으로는 많은 개발 잠재력을 내포하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단체가 해야 할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모든 구성원의 공통분모를 응집하여 대사회, 대국가에 강변으로 대변하고, 개체의 전문적 업무수행에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그 근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 담당팀을 상설하여 적재적소에 걸맞는 인력활용을 모색할 수 있는 아량이 선행되어야 되겠으며, 상황발생에 따른 임기응변적이고 나약한 수동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스스로의 위상과 환경이 시급히 조성되어야 되겠습니다.

사회가 발전하고 선진화 될 수록 우리의 전문성에 대한 요구는 더욱 강도가 높아질 것이며, 우리 또한 우리의 전문성이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속에서 자부와 궁지를 갖고 안주할 수 있도록 일치된 시각으로 매진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가 우리와 관련된 정책이나 제도를 입안할 때, 관련단체의 요식적인 의견청취에서 벗어나, 전문단체로서의 강력한 의지를 선견으로 제안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스스로의 준비와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회원 1인당 연간 100여만원에 가까운 예산을 집행하는 대한건축사협회가 여타전문단체에 비해 그목소리가 나약하기 그지없다는 자체 및 타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협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의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거니와, 소속구성원의 진실된 연대감에 입각한 참여의식과 개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능력을 평소의 업무를 통해서나, 자발적인 제언을 통해서 적재적기에 응집되어야 되겠습니다. 헐책에 앞서 진정한 충고와 편달이 어렵다는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단체는 그단체 공통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전체에 누를 끼치는 보호의 가치가 없는 소수의 악화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전긍긍 해서도 않된다고 생각하며, 정부 또한 한사람의 악화를 기준하여, 99사람의 양화를 매도해버리는 안일하고 후진적인 시각은 하루 속히 수정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소수의 악화를 헐책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기보다 다수의 양화를 존중하여 최대의 자율을 보장함이 선진사회의 행정지도가 아닌가 생각되며, 우리네 전문인이 묵묵히 분담하여 이룩해놓은 우리의 전문성은 마땅히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바야흐로 민주화의 물결속에 각계각층의 욕구가 분출되는 이시점에, 우리협회 자체의 대내적인 제도적모순, 즉 근원적으로 비민주적인 요소가 있다면, 발본하여 수정보완함도 시급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도서검토라는 명목하에 회원이 저작한 설계도서를 전연 엉뚱한 회원이 또한번 스크린하는 우스꽝스러운 일을 제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물리적인 낭비는 고사하더라도, 웃지못할 우리의 치부가 아니겠습니까, 자자제 시행에 부응하여 지부별 독립예산제가 정착하면, 도서신고제도, 나아가서 실적회비 징수제도 또한 보다 민주적이고 합리적이며 평형의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 방향으로 수정보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원의 업무수행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정보 체계구축이 시급합니다. 국내외관련 기술정보자료 기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회원상호간의 작품, 혹은 연구 결과 성과품이 협회라는 장을 통해 수록되고,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도록 많은 예산이 할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에게 당면한 제도적, 법률적 모순을 풀어나감에 있어서는, 건축사법등 관련법은 건축사만을 보호육성하기위한 법의도가 아니라는 점을 숙지하고, 국민적 시각을 수용하는데서 부터 출발하여, 보다 조직적이고 논리적인 당위성을 바탕으로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함이 더욱 설득력이 있으리라 믿습니다.